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673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4. 28.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소4170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4,8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채6200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217,454,14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20. 8. 28.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의 C 예금계좌에서 2,974,804원을 추심하였다.

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8.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한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 중 243,734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으로부터 추심한 2,974,804원은 원고가 매월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기초연금 203,000원과 자녀들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 105만 원이 입금되는 C 예금계좌에 생활비로 쓰고 남아 있던 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위 C 예금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위 2,974,804원을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55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한 돈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적법하게 원고의 예금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신청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추심명령 중 일부가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취소결정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 취소결정 전에 이미 이루어진 추심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가 추심행위로 취득한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신미진, 판사 박미영